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600호

2024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기 공고된 제 2024-521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4.7.1)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 및 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1. 유공자 포상의 기본방향

가. 무역의 날 61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함

- 정부포상은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수출의 탑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여함
- 수출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중, 무역수지 개선, 시장개척활동 등을 중점평가항목으로 함
-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서비스 및 소비재, 소재·부품, K-방산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우대함
- 무역업계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확대·우대함

나. 해외투자진출 및 효율적인 수입,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 유공자 등에 대해 포상함

-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기술획득 및 신규시장 진입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 무역환경 개선과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정부포상 실시
- 특히, 4차 산업·IoT 등 신성장 산업육성과 우수 전시회주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규제개선 및 무역애로 해소, 우수 한류·생활 소비재 및 디자인·브랜드 제품 수출, 원전, 방산, 수출물류 서비스 등 新수출성장동력 육성에 공로가 있어 정부정책에 호응도가 높은 특수유공자 등 우대·포상 실시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출의 탑	○ 백만불대 탑(5종) - 1백만불의 탑, 2백만불의 탑 3백만불의 탑, 5백만불의 탑, 7백만불의 탑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천만불대 탑(5종) - 1천만불의 탑, 2천만불의 탑 3천만불의 탑, 5천만불의 탑, 7천만불의 탑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억불대 탑(39종) - 1~9억불의 탑(매1억불) - 10~90억불의 탑(매10억불) - 100~1,000억불의 탑(매50억불) - 1,000억불 이상의 탑(매100억불)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포 상	○ 훈·포장 - 산업훈장(5등급) - 산업포장 ○ 표창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한국무역협회장표창	○ 일반유공자(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 특수유공자 - 소액수출업자 - 신시장개척유공자 - 해외현지유공자 - 재외동포무역인 - 해외주요바이어 - 해외주재수출유공자 -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 무역인력양성및산학협력유공자 - 수출물류지원 유공자 - 전자무역유공자 -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 수출포장지원유공자 - 통상문제해결유공자 - 통상마찰대응유공자 - 무역구제유공자 - 특정부문유공자 - 무역대리업자 -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유공자 - 수출지원기관유공자 - 부품소재 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 지방수출확대유공자 -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 남북경협유공자 -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수출유공자(소프트웨어 포함) - 무역수지개선유공자 - 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 여성무역인력유공자 -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 원산지제도운영유공자 -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 방산수출유공자 - 원전산업수출유공자 - 수입효율화유공자 - 소비재수출유공자 - FTA유공자 - 신성장산업 유공자 - 일자리창출 유공자 -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 수출금융활성화유공자 - 해외인증지원유공자 ○ 기관표창 - 최우수 수출지원광역자치단체 - 최우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3.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수출의 탑(49종)

-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백만불대 탑[1백만불, 2백만불, 3백만불, 5백만불, 7백만불], 천만불대 탑[1천만불,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억불대 탑[1~9억불(매 1억불), 10억불~90억불(매 10억불), 100억불~1,000억불(매 50억불), 1,100억불, 1,200억불] 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다만, 이미 당해연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이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
- 또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수출의 탑 수상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 * 수출의탑 대상 기업명 및 공적개요 등은 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검증 실시

[특별탑 자격요건]

- 브랜드 탑(3개) : 당해연도 상품 브랜드 기준 수출 실적 1천만 불 이상인 업체
 - 농·수산물, 화장품, 의류, 패션,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 서비스 탑(9개) : 당해연도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실적 최상위 3개사 및 부문별(6개) 실적 최상위 서비스 기업 총 9개사 선정
 - 전체 “서비스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최상위 3개사 선정
 - 6대 부문(부문별 1개사 선정) : (문화)콘텐츠, (보건)의료·헬스케어, (교육)에듀테크, (ICT)디지털서비스, (금융)핀테크, (기술)엔지니어링
- ※ 다양한 분야와 기업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旣서비스 탑 수상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정부포상 대상

(1) 포상대상

① 일반유공자(수출업체 종사자)

○ 대표자 (법인등기상의 대표이사)

- 당해연도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인 경우 1인만 가능

○ 종업원 (임원 포함)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업체장이 추천한 자
-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 이내

② 특수유공자

○ 소액수출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수출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에 기여한 업체 대표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 (센터별 2인 이내),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다만,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 미만의 소액수출업체에 한함

○ 신시장개척유공자

- 신규바이어 발굴, 해외전시·시장개척단 참가 등을 통해 처음 시장을 개척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 (각 15인 이내)
- 한류 등 문화콘텐츠와 제조·서비스·기술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수출모델 발굴 및 시장개척에 기여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추천한 자 (각 5인 이내)

○ 해외현지유공자

- 재외동포무역인

- 한국상품수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재외동포무역인으로서 **외교부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10인 이내)

- **해외주요바이어**

- 우리나라 물품을 장기간 수입하거나 수입규모(금액, 수량, 품목 등)가 큰 해외바이어로서 수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10인 이내)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등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조달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해외바이어로서 수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달청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 **해외주재수출유공자**

- 추천당시 현지에 1년 이상 주재하면서 수출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종사자로서 **외교부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15인 이내)
- 추천당시 현지에 1년 이상 주재하는 수출담당 공관직원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추천한 자(5인 이내)

-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유통물류기업의 해외유통물류망 진출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 국내무역전시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3인 이내)

- 무역인력양성 및 산학협력유공자

- 국내 무역인력의 발굴 및 양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인 이내)와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수출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된 자(2인 이내)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

- 수출물류지원유공자

- 수출물품의 원활한 수송과 수출물류체계 개선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3인 이내)이 추천한 자

- 전자무역유공자

- 무역자동화 및 B2B거래활성화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이 추천한 자(각 4인 이내)

-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 전자상거래(온라인, B2C)를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5인 이내)

- 수출포장지원유공자

- 수출품 수송포장업을 통해 수출품의 원거리 수송, 보관 및 이동 등에 따른 파손, 손상 및 도난에 대비하는 포장을 제공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장, 한국공업포장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통상문제해결유공자

- 통상마찰대응유공자

■ 통상마찰의 예방 및 완화를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3인 이내)

■ 전략물자의 사내 자율준수제도 이행,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으로 국가적 수출통제체제 이행 제고에 기여한 자로서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무역구제유공자

■ 국내외에서 덤핑 및 반덤핑 규제, 불공정무역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무역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특정부문유공자

- 무역대리업자(전문무역상사 등)

■ 수출알선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외국기업협회장(2인 이내), 한국무역협회장(5인 이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2인 이내)**이 추천한 자

■ 거래알선을 통해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및 저가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수입협회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개발 유공자

■ 우수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기술 개발부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디자인개발부문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브랜드 개발부문은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자**(각 3인 이내)

- 수출지원기관유공자

■ 무역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종별 수출유관단체, 외국환은행* 등 **수출지원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다만, 무역대출 실적이 우수한 시중은행 기관장이 추천한 자는 우대·포상 실시

- 부품·소재 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 기술개발 등을 통한 부품·소재, 기계류의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업종별 단체장이 추천한 자 (각 5인 이내)

- 지방수출확대유공자

- 지방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직 또는 국가직(당해지역에 근무하는 자)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 단체장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
(광역지사체 및 특별자치도별 2인 이내, 센터별 1인)

-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 세계일류상품의 개발 및 수출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남북경협유공자

- 임가공, 개성공단, 광물지원 등 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 플랜트 수주확대를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이 추천한 자(5인 이내)

-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 신기술 제품의 해외수출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서비스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유공자(소프트웨어 포함)

- 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SW 포함) 등 지식서비스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각 부분별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 SW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3인 이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2인 이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2인 이내)

- 물류산업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2인 이내), 한국해운협회장(2인 이내), 한국통합물류협회장(2인 이내)
- 엔지니어링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1인 이내)
- 방송통신·콘텐츠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콘텐츠진흥원장(1인 이내)
- 의료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1인 이내)
- 관광산업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1인 이내)
- 기타 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2인 이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3인 이내)

- 무역수지개선유공자

- 첫 수출업체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한 중소기업 등 무역수지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5인 이내)

- 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경제인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여성무역인력유공자

- 수출촉진 및 무역진흥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 적극적인 환위험관리를 통해 수출기업의 건전한 환위험 관리

문화 정착 및 무역진흥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원산지제도 운영유공자

- 효율적인 원산지제도 운영으로 공정무역질서 정착 및 국제규범 준수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 해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국내 소비수요 충당 및 산업발전을 꾀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수출증대 및 무역환경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수입협회장(3인 이내), 해외자원개발협회장(2인 이내),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1인), 한국석유공사사장(1인), 대한석유협회장(1인), 한국석유화학협회장(1인), 한국무역협회장(1인)이 추천한 자

-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 해외투자진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자(5인 이내)

- 방산수출유공자

- 군용전략물자 등 방위산업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방위사업청장, 전략물자관리원장,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3인 이내)

- 원전산업수출유공자

- 원전산업 국산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수입효율화유공자

- 수출용원자재 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수입협회장이 추천한자(각 3인 이내)

- 소비재수출유공자

- 농수산물식품, 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 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사장, 대한화장품협회장,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FTA유공자

- FTA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FTA활용확대를 통한 수출증대 및 모범적인 기업문화정착에 기여한 수출업체로서 한국무역 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4인 이내)
- FTA 홍보, 교육 등 FTA 활용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기여자 및 FTA 체결·이행과정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 협회장이 추천한 자(4인 이내)

- 신성장산업 유공자

- 4차산업, IoT, 스마트 공장 등 차세대 혁신성장동력 확산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일자리창출 유공자

- 사람중심 경제의 일환인 좋은 일자리창출로 청년실업 해소, 국민 행복 증진 등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 각종 규제개선 및 기업경영 애로해소 등을 통해 원활한 무역증진에 기여한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수출금융활성화유공자

- 수출금융 활성화를 통하여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무역보험공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해외인증지원유공자

- 시험·인증 분야에 종사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과정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표준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③ 기관표창(대통령기 친수)

-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센터

(2) 정부포상 대상 제외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받은 날로부터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장·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 포상대상자 심사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포상신청자가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
-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은 부처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검증 실시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 * 임원 등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더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 최종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상장회사의 최근 2년내(포상신청일기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중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를 받은 개인 및 법인, 또는 해당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 다만,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
-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무역의 날 포상(훈포장, 표창, 수출의 탑)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3) 포상심사

① 일반 유공자(수출업체 종사자)

○ 대표자

- 수출액,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율, 무역수지개선, 신시장개척을 통한 수출, 수출단가상승률 등을 심사

※ 정부주관 사절단 참여 등 정부수출시책에 호응도가 높거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종업원

- 소속업체의 평가점수, 근속년수 등을 심사

※ 생산직 근로자, 여성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② 특수 유공자

- 유공분야 및 추천기관에 대한 당기 무역공헌도 등을 평가·심사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특수유공자는 우대·포상 실시

③ 기관표창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4) 기타

- 특수유공자 추천과 관련하여 협회·단체 등에서 회비납부실적, 기부금품 등 소속 조직 편의 제공을 추천기준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으로 포상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포상을 취소하고 향후 추천 기관에서 제외

※ 특수유공자 추천시 추천기관의 내부 임직원을 선순위로 다수 추천할 경우, 추천기관의 추천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4. 수출실적의 산정기간 및 범위

가. 수출실적 산정기간

- 당해년도 : 2023. 7. 1 ~ 2024. 6. 30
- 전 년 도 : 2022. 7. 1 ~ 2023. 6. 30
- 전전년도 : 2021. 7. 1 ~ 2022. 6. 30

나.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수출·수입실적)의 규정에 의하고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
- 수출의 탑의 경우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칼 수출은 실적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공급업체와 수출업체중 1개 업체의 실적만 인정함
- 수탁가공수출은 무상으로 인도받은 원재료 가액을 제외한 외화가득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 다만, 유공자포상과 수출의 탑 수여를 위한 금수출실적을 계산함에 있어 금가공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순외화가득액(=금총수출액-금총수입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되 금 총수입액 중 내수용으로 공급한 금액은 금 총수입액에서 제외

다. 수출실적 확인

- 일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함
 - 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수출입
- ※ 일반 수출실적 산정기간 기준은 관세청 수출신고의 수리일을 기준으로 함
- 기타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확인 실적을 인정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
 -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경우 별지 제4-1호(예)와 같은 서류를 다운받아 제출

5.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7. 17(수) ~ 8. 16(금)

나. 신청서 작성 : 한국무역협회 무역의 날 포상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 홈페이지 주소 : <http://award.kita.net>

다. 신청서 접수처

○ 일반유공자(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의 날 사무국

* 증빙서류 포함해서 인터넷(<http://award.kita.net>)을 통해 신청(마감일 신청분까지 유효)

○ 특수유공자 : 아래 표의 포상신청서 접수처 참조

* 한국무역협회 무역의 날 포상 홈페이지(<http://award.kita.net>)을 통해 신청
(마감일 신청분까지 유효)

○ 신청서는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 우편접수도 가능 (마감일 신청분까지 유효)

*우)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6층 무역의 날 포상사무국

분 야	추천기관 및 접수처
1. 소액수출업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2. 신시장개척유공자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3. 해외현지유공자 ○ 재외동포무역인 ○ 해외주요바이어 ○ 해외주재수출유공자 ○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외교부, KOTRA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조달청 외교부, KOTRA 대한상공회의소
4.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 무역인력양성및산학협력유공자 ○ 수출물류지원유공자 ○ 전자무역유공자 ○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 수출포장지원유공자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KNET 한국무역협회, KOTRA, KNE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한국공업포장협회
5. 통상문제해결유공자 ○ 통상마찰대응유공자 ○ 무역구제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위원회
6. 특정부문 유공자 ○ 무역대리업자(전문무역상사 등) ○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개발유공자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수입협회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분 야	추천기관 및 접수처
○수출지원기관유공자 ○부품소재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지방수출확대유공자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남북경협유공자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수출유공자 (소프트웨어포함) ○무역수지개선유공자 ○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여성무역인력유공자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원산지제도운영유공자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방산수출유공자 ○원전산업수출유공자 ○수입효율화유공자 ○소비재수출유공자 ○FTA 유공자 ○신성장산업 유공자 ○일자리창출 유공자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수출금융활성화유공자 ○해외인증지원유공자	각 수출지원기관(은행 포함) 각 업종별 단체(산업부 등록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한국해운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KOTRA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KOTRA,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무역협회 KOTRA 방위사업청장, 전략물자관리원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입협회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 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섬유산업연 합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협회(FTA무역종합지원센터), KOTRA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 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 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 추천기관에서는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무역협회(무역의 날 포상사무국)**에 제출

※ 포상관련 문의처(포상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award.kita.net>)

○ 카카오톡 1:1문의 ⇒ 카카오톡 “무역의 날” 검색 → 1:1 채팅)



(☞ QR코드 스캔)

한국무역협회콜센터 : 1566-5114 서울(무역의 날 포상사무국) : 02-6000-2303, 2331~6

마.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일반유공 포상신청업체 - 제출대상 ① 수출의 탑과 포상 동시 신청 업체 ② 포상만 신청하는 업체 - 제출처 : 한국무역협회	1. 일반유공자(수출업체종사자) 포상신청서(A) 1부(온라인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수출실적 등 포상신청서 허위 제출시 포상대상에서 제외 2. 공적조서 각1부(온라인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제3-1호 서식, 제3-2호 서식), 포상신청자 전원 3.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4-1호 서식),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 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반드시 제출 4. 본사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중소기업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해당업체에 한함(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http://sminfo.mss.go.kr) 6. 중견기업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해당업체에 한함(중견기업정보마당 : www.fomek.or.kr) 7. 이력서 포상신청자 전원 각 1부(온라인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8. 대표자 이력서 1부(온라인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 수출의 탑과 포상 동시 신청업체에 한함 9.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각1부 (미제출시 미가입으로 간주하여 포상대상에서 제외) 10. 무역관련해외사절단참가실적(별지 제9호 서식 :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11. 일자리 창출 실적 증빙자료(별지 제9-1호 서식 : 실적이 있는 대표자의 경우만 해당) 1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2) 수출의 탑만 신청하는업체 - 제출처 : 한국무역협회	1. 「수출의 탑」 신청서(B) 1부(온라인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2.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4-1호 서식), 실적이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3. 본사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대표자 이력서 1부(온라인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5.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1부
(3) 특수분야유공자 - 제출처 : 한국무역협회	1. 특수유공자 포상추천서 1부(추천기관용임 : 별지 제8호 서식) 2. 무역관련 여신실적 증명서[추천기관(외국환은행)용 : 별지 제2-1호 서식] 3. 공적조서 각1부(온라인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4. 이력서 각1부(온라인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5. 특수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수출업체종사자 추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각1부(사업장별) 8. 중소기업확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소액수출업체에 한함 9.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10.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및 교원에 한함)
(4) 특별탑 - 제출처 : 한국무역협회	1. 서비스 탑 신청서(B) 1부(온라인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2. 브랜드 탑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 포상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 공적조서, 이력서(외국인 신청자의 상세인적사항, 현지주소 및 연락처, 학력 및 경력사항 포함) 각 1부 및 여권사본 등 국적증명사본 1부 첨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유공자(수출업체종사자) 포상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수출의 탑」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무역관련 여신실적 증명서
별지 제2-2호 서식	「브랜드 탑」 신청서
별지 제3호, 제3-1호, 제3-2호 서식	공적조서
별지 제4호 서식	로칼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외국환은행 발급)
별지 제4-1호 서식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KTNET 발급)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중견기업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이력서
별지 제8호 서식	특수유공자 포상추천서
별지 제9호 서식	무역관련 해외사절단 참가실적
별지 제9-1호 서식	일자리 창출 실적 증빙자료
별지 제10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상훈법 제38조제2항(자료제출 및 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작성 : award.kita.net)

일반유공자(수출업체종사자) 포상신청서(A)

* 작성대상 : 수출의 탑·일반유공 포상 동시신청 또는 일반유공 포상만 신청하는 경우

① 신 청 업 체	법인번호		업체명	(한글) (한자)	대표자	(한글) (한자)
	무역업고유번호					
	주 소(공장, 사무소 등 전사업장)			산재보험관리번호(공장, 사무소 등 전사업장)		
	1)(본사)			→		
	2)(공장)			→		
	3)			→		
	4)			→		
	업체구분 (해당란에 ○표)	* 업체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본사지방소재(), * 상장여부: KOSPI(), KOSDAQ(), KONEX() * 업종구분: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업종코드표에서 가장 유사한 업종 선택 * 특이사항(중복가능): 소비재(),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국 다변화(), 신성장산업(), K-방산(), 수출물류서비스(), 무역일자리 창출(고용증가 근로자 수 기재요망), ※항목별 관련 증빙 제출 - 고용증가 근로자 수: 2023년 12월말 근로자수 - 2022년 12월말 근로자수, 단 근로자는 고용 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포상신청	수출의 탑(), 서비스탑(), 일반유공 포상 [대표자(), 종업원사무직(), 종업원생산직()]				
	신청답종류	수출의 탑(○ ○ 불(\$)탑), 서비스탑(문화, 보건, 교육, ICT, 금융, 기술 중 택1)				
담당자성명 :		TEL:		HP:		e-mail :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TEL:
② 수 출 실 적	구 분	전전년도(a) 2021.07.01~ 2022.06.30.	전년도(b) 2022.07.01~ 2023.06.30.	당해연도(c) 2023.07.01~ 2024.06.30	최근 3년간 평균신장률	당해년도 주종 수출품목(금액순)
	직수출(A)	천불	천불	천불	%	1)HS:
	로컬등기타수출(B)	천불	천불	천불	%	품명:
	합계(A+B)	천불	천불	천불 ^{1*}	%	2)HS:
③수입실적			천불 ^{2*}		※HS는 10단위기준	
④무역수지(당해년도)	금액	천불, 외화가득율(1 [*] -2 [*] / 1 [*]) : %				
⑤시장개척 (당해년도)	5대 시장	천불, 수출비중 :		%	※ 중국(홍콩포함),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기타시장	천불, 수출비중 :		%	※ 상기 5대 시장을 제외한 전 지역	
⑥ 기 술 개 발	신기술개발	품목명 :			인정기관	
	정부기술개발참여	사업명 :			시행기관	
	수입대체상품생산	품목수 :			품 목 명	
	자기상표제품수출	상표수 :	품목수 :		상 표 명	
⑦ 유 공 자						
추천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現 재직회사)	과거포상기록	소속사업장 산재보험관리번호
대표자				년 월		
종업원(사무직)				년 월		
종업원(생산직)				년 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 . . 회사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②직수출(A), ③수입실적, ④무역수지, ⑤시장개척 항목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자동 입력

(별지 제2호 서식, 온라인 작성 : award.kita.net)

「수출의 탑」 신청서(B)

* 작성대상 : 수출의 탑 또는 서비스탑만 신청하는 경우

① 신 청 업 체	법인번호		업 체 명	(한글)	대 표 자	(한글)
	무역업고유번호			(한자)		(한자)
	주 소	본사 : 공장 :				
	신청탑종류	수출의 탑(○○ 불(\$)탑), 서비스탑(문화, 보건, 교육, ICT, 금융, 기술 중 택1)				
	업 체 구 분	* 업체코드: 대기업(), 중간기업(), 중소기업(), * 본사지방소재(), * 상장여부: KOSPI(), KOSDAQ(), KOREX() * 업종구분: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업종코드표에서 가장 유사한 업종 선택 * 특이사항(중복가능): 소비재(),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국 다변화(), 신성장산업(), K-방산(), 수출물류서비스(), 무역일자리 창출(고용증가 근로자 수 기재요망), ※항목별 관련 증빙 제출 - 고용증가 근로자 수: 2023년 12월말 근로자수 - 2022년 12월말 근로자수, 단 근로자는 고용 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사업분야 체크 (특별탑 신청시)	☐ (문화) 콘텐츠 ☐ (보건) 의료/헬스케어 ☐ (교육) 에듀테크 ☐ (ICT) 디지털서비스 ☐ (금융) 핀테크 ☐ (기술) 엔지니어링 ☐ 해당없음				
	특이사항 (중복가능)	소비재(),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국 다변화(), 무역일자리 창출(고용증가 근로자 수 기재요망) - 고용증가 근로자 수: 2023년 12월말 근로자수 - 2022년 12월말 근로자수, 단 근로자는 고용 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담당자	성명 : TEL : 핸드폰 : e-mail :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화 :	
	산재보험관리번호 :					
② 수 출 실 적	구 분	전전년도(a) 2021.07.01~ 2022.06.30	전년도(b) 2022.07.01~ 2023.06.30	당해연도(c) 2023.07.01~ 2024.06.30	최근 3년간 평균신장률	주요 수출품목 (금액순)
	직수출(A)	천불	천불	천불	%	1)HS: 품명: 2)HS: 품명:
	로컬등기타수출(B)	천불	천불	천불	%	
	합계(A+ B)	천불	천불	천불	%	
③수입실적	천불	천불	천불		※ HS는 10단위기준	
④공적요지(500자 이상) * 필요시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 . . 회사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②직수출(A), ③수입실적, ④무역수지, ⑤시장개척 항목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자동 입력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기재요령(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1. ①항의 업체구분란과 포상신청란은 해당란에 ○ 표시

※ 신청타종류에서 서비스타은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직접 수출입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①항의 주소 및 산재보험관리번호란은 해당업체 전 사업장의 주소 및 전산등록번호를 주사업장순으로 전부 기재할 것

(예) 2012-0000000 총 11자리숫자로 표시(자세한 것은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필히 첨부

3. ②항 수출실적 기재 방법

구분	신청(기재)절차	신청 페이지
직수출입	무역협회 전산자료 자동 반영	-
로칼 등 기타수출	① 외국인 은행 발행 서류(별지 제 4호) 첨부	-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한국무역정보통신) 간접수출입실적 증명서 발급시 자동 반영	ulocal.utradehub.or.kr
용역/전자적 무체물 선용품 공급 외국인 외화영수부	무역협회 전산자료 자동 반영 (증명서 신청 및 발급 승인 완료시)	membership.kita.net
전자상거래 및 목록통관	자동 반영(무역통계진흥원 홈페이지 신청시)	www.tmydata.or.kr

※ 직수출 실적확인 : 한국무역협회 기업현장지원실 및 국내 지역본부에서 증명서 발급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membership.kita.net))에서도 직접 증명서 발급 가능)

※ 최근 3년간 평균신장률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자동입력 : (전년도 수출신장률+당해연도 수출신장률)÷2

4. ③항은 무역협회의 전산자료 실적을 기준으로 함

5. ⑥항의 “신기술개발”은 NET, NEP 마크획득, 장영실상 수상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신기술 개발로 인정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증빙서 첨부(최근 3개년 실적에 한함)

“수입대체품생산”은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에 당해품목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해당단체(조합, 협회등)의 증빙서 첨부(최근 3개년 실적에 한함)

“자기상표제품수출”은 특허청의 상표등록증과 수출계약서(수출신고필증)사본 1부

6. ⑦항의 과거포상기록은 훈장, 포장, 대표(대통령표창), 국표(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기타 차관급/청장/광역 지자체장 이상의 포상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록을 기재

* 국표(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훈격은 “대한민국 상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필히 조회후 기재 요망
<www.sanghun.go.kr/nation/participation/sangopen/sangInfoOpen.do>

7.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별지 제2-2호 서식)

「브랜드 탑」 신청서

* 작성대상 : 당해연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상인 상품 브랜드 업체

①	상품 브랜드명	(한글 / 한자 / 영문) 000 / 000 / 000				
②	상품 브랜드 개 요	의미 :				
		런칭일시 :				
		최초 수출년도 :				
		주요 수출국가 :				
③ 브 랜 드 수 출 실 적	구 분	전전년도(a) 2021.07.01~ 2022.06.30	전년도(b) 2022.07.01~ 2023.06.30	당해연도(c) 2023.07.01~ 2024.06.30	최근 3년간 평균신장률	비고
	직수출(A)	천불	천불	천불	%	1)HS: 품명: 2)HS: 품명: ※ HS는 10단위기준
	로컬등기타수출(B)	천불	천불	천불	%	
	합계(A+ B)	천불	천불	천불	%	
④ 매 출	국내 총매출	원	원	원	%	
⑤공적요지(500자 이상) *필요시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 가능						
⑥서약 상기 제출 정보(①~⑤번 항목)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 . . 회사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브랜드 수출실적에 대한 증빙은 동 양식으로 같음하나, 추가자료 요청 가능. 제출한 실적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밝혀질 경우 브랜드 탈 수여가 취소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온라인 작성)

공 적 조 서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1)성 명	(한글)			(한자)		
(2)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및 외국 인 등록번호	-			(3) 군번(군인의 경우)		
	년 월 일					
(4)국 적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소속사업장 산재보험관리번호		
(9)직 위	(10)등 급(직급·계급)		(11)동종업계 총 수공기간	(12)현 소속업체 근무기간		
			년 월	년 월		
(13)공적요지(50자 이상 ~ 100자 이내) * (31)공적사항을 요약						
(14)추천훈격			(15)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4. . . 추 천 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20)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21)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22)제재사유	
주요경력(민간 및 군사 학력과 경력)			
(23)년 월 일	(24) 이 력	(25) 년 월 일	(26)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27)년 월 일	(28)내 용	(29)년 월 일	(30)내 용
(31) 공 적 사 항			
* 각 항목별 한글 50자 이상 800자 이내(관련 증빙 첨부) (대표자) 1.기본사항, 2.수출실적, 3.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 4.해외시장 개척활동, 5.기타 공적내용 (종업원) 1.기본사항, 2.기여도, 3.수상 등 공적내용, 4.기타공적 및 결론 (이하 백지사용)			

※ 기재요령(온라인 작성, 수출의 탐만 신청하는 업체는 작성할 필요 없음)

* **외국인의 경우** 국문공적조서와 함께 **영문공적조서**를 반드시 제출(외국인 신청자의 상세인적사항, 현지주소 및 연락처, 학력 및 경력사항 포함)

(13) **공적요지**는 (31)공적사항의 요약으로 반드시 50자 이상~100자 이내로 작성

(23)~(26)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건 이상 기재하며, **경력**은 최초입사(개인의 소경력 중)년월을 포함하여 주요경력 기재

(27)~(30) **과거포상기록**은 총리이상(훈 ·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정부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 국표(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훈격은 “대한민국 상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필히 조회후 기재 요망

<www.sanghun.go.kr/nation/participation/sangopen/sangInfoOpen.do>

(31) **공적사항**에는 다음 작성항목을 포함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가. 대표자 ①회사설립년도 ②자본금 ③종업원수 ④해외지사 ⑤최근 3개년 매출액(원화(₩) 기준) ⑥ 복지시설을 항목별로 작성

⑦최근 3년간 연도별 수출실적, 당해연도 지역별 · 품목별 수출실적(US달러 기준)을 상세히 기록

⑧기술개발,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을 위한 노력 등을 기재

나. 종업원 ①근무년수, 해외근무경력, 회사 내에서 생산성 향상 및 수출증대를 위한 기여도

②사의 표창수상 사실 등 개인공적을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증빙자료 첨부(평가요소)

* (별지 제3-1호 및 제3-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

(별지 제3-1호 서식, 온라인 작성)

대표자 공적사항

(1)수공기간(근무기간)	【작성지침】 수공기간을 고려하여 수행한 업무를 시간순으로 열거형식으로 작성
가. 나. }	
(2)수상이력 및 혁신 기여도	【작성지침】 기업 대표자가 이끌어낸 대외수상이력, 시장에서 보다 나은 제품·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 디지털전환 사례 등 혁신에 기여한 내용 위주로 작성
가. 나. }	
(3)국가발전 및 국민 생활 향상 기여도	【작성지침】 수출을 통해 이루어낸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에 대한 기여도
가. 나. }	
(4)조직문화 개선 기여도	【작성지침】 노사관계 및 기업조직문화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 위주로 작성
가. 나. }	
(5)사회공헌 및 기타 기여도	【작성지침】 사회공헌 내용 및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
가. 나. }	

※ 기재요령 : 항목별로 최소 200자 이상이어야(최대 1,300자) 하며 공적사항 전체내용은 최소 2,000자 이상이어야 함.

※ 주의사항 : 작성한 공적사항 수출의 탑 및 정부포상 심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포상자 확정 후 언론 홍보 등에도 활용되니 거짓없이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

(별지 제3-2호 서식, 온라인 작성)

종 업 원 공 적 사 항

(1)수공기간(근무기간)	【작성지침】 1.29 수공기간을 고려하여 수행한 업무를 시간순으로 열거형식으로 작성
가. 나. }	
(2)업무과제 창의적 해결 기여도	【작성지침】 1.29 당면한 생산 제품, 기술, 판매 등의 업무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 위주로 작성
가. 나. }	
(3)조직학습 및 성장 전략 기여도	【작성지침】 1.29 조직학습이 조직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성장을 위한 노력,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기여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
가. 나. }	
(4)근무부서별 성과 기여도	【작성지침】 1.29 근무했던 부서별로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내용 위주로 작성
가. 나. }	
(5)사회공헌 및 기타 기여도	【작성지침】 1.29 사회공헌 내용 및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
가. 나. }	

※ 기재요령 : 항목별로 최소 200자 이상이어야(최대 1,300자) 하며 공적사항 전체내용은 최소 2,000자 이상이어야 함.

※ 주의사항 : 작성한 공적사항 수출의 탑 및 정부포상 심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포상자 확정 후 언론 홍보 등에도 활용되니 거짓없이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직수출 실적 제외)

① 업 체 명				② 법인등기번호	
				③ 무역업고유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용 도	무역의 날 포상신청
⑤ 수 출 실적	구 분	전전년도(A) 2021.7.1~2022.6.30	전년도(B) 2022.7.1~2023.6.30	당해년도(C) 2023.7.1~2024.6.30	최근 3년간 평균 신장률
	Local L/C 수출				% (전년도의 전전년 대비 신장율과 당해 년도의 전년대비 신장률의 산술평균값)
	구 매 확 인 서				
	중계무역(가득액)				
	위탁가공수출(가득액)				
	수탁가공수출(가득액)				
	기 타				
	합 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확인 발급합니다. 2024. . . 은행 지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실적 없음을 확인받아 제출(수출)의 탐에 대해 신청시 제출해야 함

※ 전년도 실적을 반드시 기재하고, Local L/C, 구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1) **Local L/C수출** : Local L/C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후 그 대금으로 거래은행에 입금된 달러금액(원화인 경우 입금일 매매기준율로 환산)
- 2)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으로 받은 금액(단, 외국환 은행에서 확인을 받은 금액에 한하여 달러로 환산)
- 3) **중계무역** : 수출금액(FOB) - 수입금액(CIF) = 가득액(마진) ☞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확인발급
- 4) **위탁가공수출** : 완제품수출금액(거래은행입금액) - (원부자재통관금액 + 현지공장가공임) = 가득액(마진)
☞ 거래은행에서 확인발급
- 5) **수탁가공수출** : 완제품(가공품)수출금액 - 무상원부자재수입금액 = 가득액 ☞ 거래은행에서 확인발급
- 6) **기 타** :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기관에 대한 물품의 매도,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결제통화 불문),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철충교역의 보완거래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한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수출

- 경영·법무·회계·엔지니어링·디자인 등 **유역** 및 **소프트웨어**(솔루션포함), 영화·게임·애니메이션·만화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무체물**에 대한 수출실적은 거래은행에 대금이 입금된 이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다음, 수출확인신청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무역협회(www.onlinetrade.or.kr 참조)에서 발급 (온라인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 외국인 외화영수부 국내수출자 공급물품 수출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역협회 본부·지역본부 내방 신청 및 발급

(별지 제4-1호 서식)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① 업 체 명				② 법인등기번호	
				③ 무역업고유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용 도	무역의날 포상신청
⑤ 수 출 실 적	구 분	전전년도(A) 2021.7.1~2022.6.30	전년도(B) 2022.7.1~2023.6.30	당해년도(C) 2023.7.1~2024.6.30	최근 3년간 평균 신장율
	Local L/C 수출				% (전년도의 전전년 대비 신장율과 당해 년도의 전년대비 신장율의 산술평균값)
	구 매 확 인 서				
	합 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확인 발급합니다. 2024. . . 발급기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이사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별지 제4-1호 서식은 로컬 수출실적에 한해 별지 제4호 서식을 갈음함

※ 상위 기재된 양식은 KTNET 온라인 수출실적 증명서에 대한 샘플이며, 포상 또는 수출의 탑 신청 기업은 KTNET의 간접수출실적증명서서비스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 접속,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온라인 신청, 발급 제출)

중 소 기 업 확 인 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용도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단, 종업원 수와 자본금은 2024년 6월 30일 현재 기준

중견기업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함

※ 발급 문의처 : 중견기업연합회 ☎ 02-3275-2985

(별지 제7호 서식, 온라인 작성)

※ 사진을 반드시 붙여 주십시오	이 력 서					※ 학력 기재시 입학 및 졸업 년월을 반드시 기재, 경력사항은 최초 산업체경력을 반드시 기재			
	성 명	(한글) *외국인은 영문성명 기재 (외국인의 경우, 신청자의 상세인적사항, 현지주소 및 연락처, 학력 및 경력사항 포함) (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기재				연 령	만	세	
	현 근 무 처								
현 주 소									
이 메 일					휴대폰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자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4. . .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특수유공자 포상추천서

추천 기관	기관명						
	담당자	직위 : e-Mail :	성명 :	전화번호 :			
연번	추천부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과거포상기록 (증빙서사본첨부)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1							
2							
3							
4							
5							
6							
7							
8							
9							
10							
첨부서류 1. 공적조서 각1부(별지 제3호 서식) 2. 이력서 각1부(별지 제6호 서식), 사진부착 3. 특수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수출업체종사자 추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각1부(사업장별) 6. 중소기업확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소액수출업체에 한함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8.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및 교원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 . . 추 천 자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무역관련 해외사절단 참가실적

1. 사절단 개요

○ 사절단 명칭 :

○ 사절단 단장

- 소속 :

- 직위 :

- 성명 :

○ 파견시기 :

※ 적용기간 : 2023. 7. 1 ~ 2024. 6. 30

○ 파견지역 :

2. 참석자

○ 회사명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별지 제9-1호 서식)

일자리 창출 실적 증빙자료

① 업 체 명			② 법인등기번호	
			③ 무역업고유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기업유형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⑥ 일자리 수	2022년 12월말	명	⑦ 고용증가율 * 산식 : (2023년 12월말 근로자수 - 2022년 12월말 근로자수) / 2022년 12월말 근로자수 * 100	%
	2023년 12월말	명	⑧ 정규직비율 (2023년 12월말 기준)	%
첨부서류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2022년 12월말, 2023년 12월말)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4.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별지 제9-1호 서식은 유공자 포상 시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대표자에 대한 평가 우대를 위한 증빙자료에 해당함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상훈법 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제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제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20조